

#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연구\*

- 의연금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을 중심으로 -

양기근\*\*, 이은애\*\*\*

---

최근 빈발하는 재난은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외부의 도움은 간절하다. 재난에 처한 이재민을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서 도우려는 재해의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연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재민이 수급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기준이 필요하다. 재해의연금이 어떤 합리적 배분기준 없이 분배된다면, 이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의연금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재난지역의 공동체가 재해구호품이나 재해의연금의 분배를 놓고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분기준으로 첫째, 재해의연금 지원대상자, 둘째, 재해의연금의 지급시차 문제, 셋째, 재해의연금 지원의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론은 의 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활용하는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주제어:** 재난, 이재민, 재해구호, 재해의연금

---

## 1. 서론

최근 빈발하는 재난은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외부의 도움은 간절하다. 재난으로 어려움에 놓인 이재민에 대한 외부의 도움으로는 재해구호품과 재해의연금,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의 도움이 어떤 합리적 배분기준 없이 분배된다면, 이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배분과 관련된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재해구호품이나 재해의연금의 배분으로 인해 오랜 동안 사이 좋게 지내오던 공동체가 반목과 갈등에 놓이기도 한다. 즉, 외부의 도움이 재난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재난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박태순·양기근, 2009: 304).

---

\* 본 논문은 2010년 국가위기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위해 심도 있는 제언과 세심한 부분까지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재난에 처한 이재민을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서 도우려는 재해구호품과 재해의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연금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재민이 수급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기준이 필요하다. 물론 합리적 배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재난의 빈발에 따라 재해의연금의 배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전문가 및 현장실무 활동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배분의 기준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분기준으로는 첫째, 재해의연금 지원대상자, 둘째, 재해의연금의 지급시차 문제, 셋째, 재해의연금 지원의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론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활용하는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재해의연금의 의의와 특징

재해의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도와주기 위해 내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재해의연금은 성금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성금의 다양한 유형중 하나가 의연금이며, 재해의연금은 이러한 의연금의 한 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재은, 2008: 23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의연금(義捐金)은 사회적 공익이나 자선을 위해 내는 돈으로 정의된다<sup>1)</sup>. 즉, 의연금은 재난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공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을 위하여 내는 돈인 것이다.

이러한 재해의연금이 지니는 특성을 이재은의 연구(2008: 232)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의연금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이재민에 대한 자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재해의연금은 전달자가 임의대로 자신의 활동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재난 피해 상황 하에서 이재민을 위한 자선의 목적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둘째, 재해의연금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모금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성금은 모집 및 홍보 활동이 있으나, 재해의연금은 그 성격상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의연금 모금을 위한 모집 및 홍보가 어렵고<sup>2)</sup>,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신속한 도움을 주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폭넓은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재해의연금은 일반적으로 모집의 과정에 있어 언론과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모금이 이루어짐에 따라 홍보 등이 필요 없어 별도의 모집경비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http://www.korean.go.kr/>(검색일, 2010.3.9)

2) 독일의 경우 특별재난시에는 의연금 모집기관이 신문, 책자, TV를 통해 국민에게 성금모집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신문사나 방송사에 광고비를 주지는 않는다(이재은·양기근, 2006: 355).

셋째, 재해의연금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도보다 공익적 부분이 더 고려된다. 현행 재해의연금의 경우도 특정 피해자나 지역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 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sup>3)</sup>.

넷째, 재해의연금은 모금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금기관은 단지 전달을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과 특징은 재해의연금의 공익적 성격과 더불어 재해의연금의 전달과정에서의 배분의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재해의연금의 지원 기준 논의

### 1) 지원대상자

의연금 지원 대상자는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 79호)」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우선, 재해로 인한 사망자 유족 등에 대한 의연금은 사망자·실종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며 세대주 1,000만원, 세대원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신체장해등급 7급의 상해를 입은 부상자의 경우 세대주 500만원, 세대원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재해로 인한 주택파손·침수에 대한 의연금은 주택 전과, 반과, 침수 이재민에게 지원되며 주택전과는 세대당 500만원, 주택반과는 세대당 250만원, 주택침수는 세대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해로 인한 생계지원 대상 피해에 대한 의연금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4조 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임·축·어가 및 염생산자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자에게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 2) 지급시차

재난이 발생하면 시군구 단위에서의 피해조사를 거쳐 광역시도에서 피해 집계가 이루어진 후, 의연금 지원 대상 재해로 확정되면 의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의연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의연금의 지원 대상이 대체로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확정되면, 의연금의 지원 대상도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피해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미국의 경우는 의연금 기증자가 용도를 선택·지정해서 기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십자는 9·11테러나 동남아시아 쓰나미, 카트리나 재난 피해를 지정하여 의연금을 기탁할 수 있다(이재은·양기근, 2006: 351).

현재 의연금의 지급소요 기간은 재해의 규모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체로 재난발생 후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된다.

### 3) 지원원칙

의연금의 지원 원칙에 대해서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나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 79호)」<sup>4)</sup>에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의연금의 사용목적 및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일반적 원칙으로서는 공익성, 투명성, 기탁자의 의도반영, 공정성, 효율성(지원효과), 신속성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공익성이란 의연금이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내는 것이므로, 이재민에 대한 위로성격과 함께 피해지역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투명성이란 의연금 모금과 배분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모금과 배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기탁자의 의도반영이란 의연금 자체가 국민이 특정 지역의 피해에 대해 내는 성금이므로 지역선호나 피해복구에 대한 기탁자의 의도가 반영됨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넷째, 공정성이란 지급하는 의연금규모는 재산규모, 가족 수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이재민에게 포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효율성(지원효과)이란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지원 후 이재민의 삶의 질 변화, 지역사회 등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는 차기 지원방향에 반영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신속성이란 의연금은 지급절차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기 전에, 신속하게 배분함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 1) 국내연구

재해의연금의 배분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홍영교 외(2009)는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의 차이를 중심으로 재해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전문인력 확보와 배치, 표준화된 구호품 전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의 개발과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

4)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B2531&PROM\\_NO=21214&PROM\\_DT=20081231&HanChk=Y](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B2531&PROM_NO=21214&PROM_DT=20081231&HanChk=Y)(검색일, 2010.3.30)

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로는 우선, 주민들은 공무원에 비해 재해경험이 많았고, 구호품의 전달시점과 구호품 내용에 대한 불만과 자신들의 의견이 차후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재해관련 업무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아 업무숙련도가 낮았으며, 인력과 구호물품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면서 재난 발생시 일반 업무와 재난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재난관련 업무를 기피하고 있었다.

이재은(2008)은 미국과 일본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 비교를 통한 한국의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개선 방향으로 기존의 공급자중심에서 수요자 관점에서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개선 방향으로 첫째, 의연금 배분 기준의 합리적 지원을 위해서는 인명피해와 주택 피해를 기준으로 한 배분 기준의 마련, 의연금 지급의 효율성과 신속성의 충족, 지정기탁 의연금의 허용 등을, 둘째, 의연금의 직접지원과 관련된 효율화 방안으로 의연금의 직접 지원액의 하한선 설정, 생활 재건 자금의 장기 분할 지급 및 지급방식의 다양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 따른 이재민 위로금 지급 차등화 폐지, 생계 지원을 위한 의연금 지급, 의연금 지원 대상의 확대 필요 등을, 셋째, 간접지원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이재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장기 자원봉사 단체 지원 사업, 정상생활 복귀 프로그램 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이재은·양기근(2006)은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의 의연금 모금 및 배분체계의 개선방향을 현재 재해의연금을 통한 지원서비스가 주로 금전적이고 물질적 차원의 지원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보다 전문화되고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인 실용적 차원의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재해의연금의 모금 및 지원은 시민사회 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모금기관의 허가제 규제를 푸는데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며, 셋째, 의연금 기탁자의 재해복지프로그램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넷째, 모금된 의연금에서 모집 경비 및 운영비를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다섯째, 단기 응급지원 내용으로부터 장기적인 재해복지 차원의 지원내용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김승권(2002)은 수재의연금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연금 성격에 대한 인식부족, 재해구호에 대한 시·도의 책임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재해발생시 의연금으로 지원되는 사망자 위로금, 장기구호비 등은 시·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선 지원되고, 사후 의연금 등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 이재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의연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재원(2000)은 재해 발생 이후 재원과 물자가 부족하기 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구호 행정이 체계화되지 않아 기대되는 수준의 구호활동이 전개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구호품 지급 기준의 이원화, 현장중심 전산망 구축, 권역별 관리체계 구축, 민간구호 파트너십 구축, 중앙정부·언론·구호감사 협조 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2) 국외연구

해외의 연구로는 Paul(2006), Thomas & Fritz(2006), Morris(2003), Wodon & Yitzhaki(2002)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Paul(2006)은 개발도상국의 재해구호의 어려움, 특히 긴급구조의 어려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즉 이재민들은 극단적인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 외부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개발도상국의 이재민은 자국의 자원으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원조 기관과 외국 및 비정부 조직(NGO)을 통한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재해구호나 원조의 경우, 공공 물품 분배에 있어 광범위한 부패나 대대적인 불법 행위들로 인해 모든 이재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수 없게 되어, 구호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Thomas & Fritz(2006)는 기업 등이 구호물품을 기부하는 것보다 구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시급하다고 하였다. 2006년 12월 26일 남아시아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한 후에 2주 내에 Sri Lanka의 Colombo공항에는 물품이 쌓이기 시작하였으나, 공급 창고들을 막고 수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직후 기부보다는 재난구호체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재은, 2008: 234 재인용).

Morris(2003)는 재해이후 이재민으로 분류하고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금된 재해의연금품을 수혜자들에게 분류하여 전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음식, 의류, 그리고 의약품으로 이루어지는 구호물품의 양이 이재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1998년 Honduras에서 발생했던 허리케인 Mitch의 경험적 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 것이다. Morris는 재해의 연금품 배분을 위한 간단한 모델을 통해 재해구호품을 받을 확률은 부(wealth)보다는 재산적 손실(assets losses)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그는 이재민들이 살던 거처(dwelling)에 대한 피해로 고통 받는 것을 통제하게 되면, 제공받아야 할 의연금품의 양은 허리케인인 Mitch 이전의 부보다 재산적 손실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odon & Yitzhaki(2002)는 개념상으로 재해의연금품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피해의 정도는 전적으로 부(wealth)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동일 재난으로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부가 적은 가난한 이재민의 고통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재난으로 같은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부가 많은 이재민 보다 부가 적은 가난한 이재민을 우선적 구호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재해의연금품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외의 연구들에서 명확한 재해의연금품의 배분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분 기준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연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표 1> 재해의연금 지원 및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목적, 분석대상, 주요내용
홍영교 외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재해구호품 전달체계 개선방안</li> <li>▶연구대상: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li> <li>▶주요내용: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통한 재해구호품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시</li> </ul>
이재은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체계 개선방향</li> <li>▶연구대상: 한국과 미국일본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li> <li>▶주요내용: 미국, 일본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 비교를 통한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체계 개선방향 제시</li> </ul>
이재은양기근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 개선방향</li> <li>▶연구대상: 한국과 미국일본·독일·프랑스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li> <li>▶주요내용: 미국일본독일프랑스와의 재해의연금 지원체계 비교를 통한 한국의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 체계의 개선방향 제시</li> </ul>
김승권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수재의연금 전달체계 개선방안</li> <li>▶연구대상: 한국의 수재의연금 전달체계</li> <li>▶주요내용: 수재의연금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의연금 성격에 대한 인식부족, 재해구호에 대한 사·도의 책임부족 제시</li> </ul>
이재원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한국 재해구호 행정체계 개선방안</li> <li>▶연구대상: 한국의 재해구호 행정체계</li> <li>▶주요내용: 재해발생 이후 자원과 물자가 부족하기 보다는 이를 관리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하는 구호행정이 체계화되지 않아 기대되는 수준의 구호활동이 전개되지 못함</li> </ul>
Paul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개발도상국 이재민 구호체계 개선</li> <li>▶연구대상: 개발도상국의 재해구호 및 긴급원조체계</li> <li>▶주요내용: 개발도상국의 경우 내란 발생시 해외 구호품의 분배에 있어 부패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재민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함</li> </ul>
Thomas & Fritz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재해구호 및 의연금체계 개선</li> <li>▶연구대상: 남아시아 지진해일 사례</li> <li>▶주요내용: 재난발생 직후 민간단체들의 재난구호 체계화와 이의 개선 및 유지 필요</li> </ul>
Morris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재해의연금 모금 및 배분체계 개선</li> <li>▶연구대상: 허리케인 Mitch 사례</li> <li>▶주요내용: 자연재난이후 이재민으로 분류하고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금된 재해의연금품을 수혜자들을 분류하여 전달하는 것은 어려움</li> </ul>
Wodon & Yitzhaki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목적: 재해의연금 체계 개선방안</li> <li>▶연구대상: 재해의연금 체계</li> <li>▶주요내용: 피해의 정도는 전적으로 부(wealth)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재해의연금품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가능</li> </ul>
분 석	<p>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배분체계 개선에 대해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작 재해의연금품의 배분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함. 배분기준의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배분기준에 대한 논의 필요</p>

자료: 이재은(2008: 235)에서 추가·수정 보완함.

### III. 연구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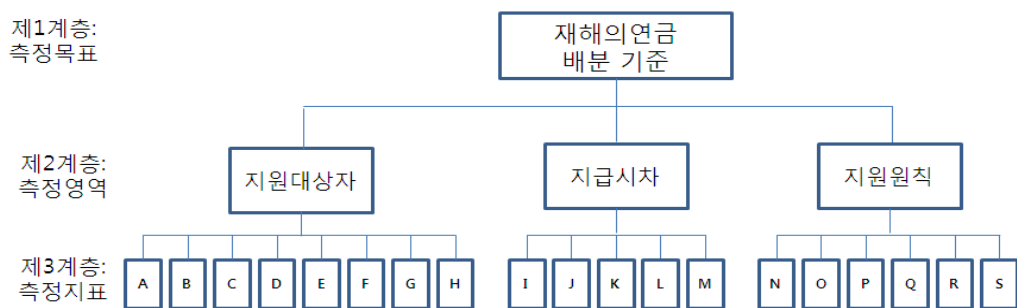
#### 1. 분석틀의 구성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정립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는 재해의연금의 지원대상자가 어떻게 선정되느냐 이며, 둘째는 재해의연금의 지급시차이며, 셋째는 재해의연금의 지원원칙이 될 것이다.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측정요소 및 모형은 측정목표 → 측정영역 → 측정지표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계층적 구조 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의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① 측정목표: 재해의연금의 배분 기준
- ② 측정영역: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
- ③ 측정지표: 각 측정영역별 측정지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자 영역은 ‘주택피해(전파, 반파), 주택피해(침수), 농어업임업업 피해, 소상공인 피해, 허가 영세자영업자 피해, 무허가 영세자영업자 피해, 한국거주 외국인 피해, 사회복지시설 피해’로, 둘째, 지급시차 영역은 ‘생계지원(농어업임업업자), 주택피해(전파, 반파), 주택피해(침수),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생계지원(소상공인)’으로, 셋째, 지원원칙 영역은 ‘공익성, 투명성, 기탁자의 의도반영, 공평성, 효율성(지원효과), 신속성’으로 구성된다.



제3계층 측정지표	지원대상자	A. 주택피해(전파, 반파) D. 소상공인 피해 G. 한국거주 외국인 피해	B. 주택피해(침수) E. 허가 영세자영업자 피해 H. 사회복지시설 피해	C. 농어업임업업 피해 F. 무허가 영세자영업자 피해
	지급시차	I. 생계지원(농어업임업업자) L.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J. 주택피해(전파, 반파) M. 생계지원(소상공인)	K. 주택피해(침수)
	지원원칙	N. 공익성 Q. 공평성	O. 투명성 R. 효율성	P. 기탁자 의도반영 S. 신속성

<그림 1>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 측정모형의 구조

## 2. 조사개요와 분석방법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및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이용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는 재난연구자(교수, 연구원 등), 자원봉사센터와 시민단체 활동가, 그리고 자원봉사자 40명에게 2010년 1월 4일부터 2월5일까지 e-mail 및 우편과 팩스전송을 통해 발송 및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전체 40부 중 29부(회수율 72.5%)를 회수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AHP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은 Expert Choice 11.5를 사용하였다.

<표 2> 표본의 구성

성별	남자			여자	
	20			9	
전공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		의약학계열
	23		5		1
활동 분야	연구자(교수 등)	자원봉사센터	시민단체 활동가	자원 봉사자	기타
	11	6	5	1	6
학력	대졸			대학원 이상	
	5			24	
연령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9	14	4	1

설문 내용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연금 배분 기준에 대해 영역을 제2계층 요인 3개, 각 영역별 지표를 토대로 제3계층 요인 19개로 선정하였다. 이들 설문 내용의 구성은 각 문항별로 한 번에 2개 요소를 상호 비교하는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방법이 활용되었다.

<표 3>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의 측정 요소

측정목표	측정영역	측정치표	주요내용
재해 의연금 배분 기준	지원 대상자*	주택피해 (전파, 반파)	재해로 인한 주택의 전파는 세대당 500만원까지 지원 재해로 인한 주택의 반파는 세대당 250만원까지 지원
		주택피해(침수)	재해로 인한 주택의 침수는 세대당 100만원까지 지원
		농어업 임영업 피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 4조 1항 제 1호 나목(재난으로 인하여 주생계수단인 농·임·축·어업이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에 따른 생계지원과 학자금 면제를 받은 농·임·축·어업자 및 영 생산자에게 1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자에게 100만원까지 지원
		허가영세 자영업자 피해	의연금 지원 규정에는 없으나, 개별 민간단체에 의한 지원이나, 보건복지부의 긴급지원제도 등에 의해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무허가영세 자영업자 피해	
		한국거주 외국인 피해	
		사회복지시설 피해	
재해 의연금 배분 기준	지급 시차**	생계지원 (농어업임영업자)	-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지방자치단체 피해사실 확인 후 지원(대략 15~30일 소요) - 지급 시기는 동일하게 이루어짐
		주택피해 (전파, 반파)	
		주택피해(침수)	
		인명피해 (사망, 실종, 부상)	
		생계지원 (소상공인)	
	지원 원칙	공익성	의연금은 불특정 다수인 국민이 내는 것이므로, 이재민에 대한 위로성격과 함께 피해지역공동체의 공동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투명성	의연금 모금과 배분과정은 투명해야 하며, 모금과 배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탁자의 의도반영	의연금은 국민이 특정 지역의 피해에 대해 성금을 내는 것이므로 지급 지역선호나 피해복구에 대한 기탁자의 의도가 반영됨이 바람직하다.
		공평성	지급하는 의연금규모는 재산규모, 가족수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이재민에게는 포괄적으로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효율성 (지원효과)	의연금 지원에 대한 이재민의 만족도, 지원 후 이재민의 삶의 질 변화, 지역사회 등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이러한 평가는 차기 지원방향에 반영됨이 바람직하다.
		신속성	의연금은 지급절차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기 전에, 신속하게 배분함이 바람직하다.

\* 지원대상자에서 인명피해의 경우, 지원의 본원적 당위성을 감안하고, 동시에 지급시차 및 지원원칙과의 상호 연관적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제외함.

\*\*AHP 설문조사에서 피해유형에 따라 의연금 지급시기에 차이를 둔다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물어보았음.

Satty(1980)가 체계화한 AHP 기법모형 개발은 4단계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오상영·하대용, 2006: 305). 1단계는 계층분석법(AHP) 모형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서 주어진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속성별로 계층화하여 분해(decomposition)하는 과정으로 한 계층내의 속성의 수가 9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2단계는 각 계층에 있는 한 속성의 관점에서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요인간의 쌍별 비교를 행하여 그 결과를 행렬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계층분석법의 수량화를 위한 척도는 9점 척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sup>5)</sup> 3단계는 쌍별 비교를 통하여 얻어진 행렬을 이용하여 각 계층에 있는 여러 속성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를 추정하는 단계이다. 가중치의 추정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Satty(1980)가 제안한 고유벡터(eigen vector)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4단계는 최하위 계층에 있는 여러 속성에 대한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하여 상대적 비중 또는 우선순위를 구하기 위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는 과정이다. 종합가중치를 구함으로써 최상위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 문제의 일반적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하위 계층에 있는 여러 속성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분할 수 있다. 대안의 종합가중치는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W_i = \sum(w_j)(u_{ij})$$

여기서,  $W_i$  : I번째 대안의 종합가중치

$w_j$  : 평가기준 j의 상대적 가중치

$u_{ij}$  : 평가기준 j에 대한 I번째 대안의 가중치

각 행렬의 가중치는 고유치(eigen value)를 계산하여 구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계산이 복잡하여 보통 근사방법인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주로 사용한다.

AHP 기법의 신뢰성 분석은 각 평가요소들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 개개인의 판단상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CR이 10%(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Satty, 1982; 이재은 외, 2007: 291). 일관성에 대한 편차는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로 나타낸다. 일관성을 추정하기 위해 n개의 요소들 즉,  $A_1 \cdots A_n$ 에 대해 일정한 기준의 특성치(중요도, 선호도 등)  $W=(w_1 \cdots \cdots w_n)$ 의 쌍별 비교한다. 쌍별 비교는 다음과 같다(오상영·하대용, 2006: 306).

5) 이원비교시 사용되는 척도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차이를 최대한도로 반영할 수 있는 범위를 요구하며 1956년 밀러(Miller)의 심리학 실험에서 “인간은 7(±2)개의 대상을 혼동 없이 동시에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결과로부터 척도의 범위는 1에서 9까지의 수 또는 이의 역수들로 한다(이동규·양기근, 2009: 57).

$$A = \begin{matrix} & A_1 & A_2 & \cdots & A_n \\ A_1 & \begin{bmatrix} \frac{w_1}{w_1} & \frac{w_1}{w_2} & \cdots & \frac{w_1}{w_n} \\ \frac{w_2}{w_1} & \frac{w_2}{w_2} & \cdots & \frac{w_2}{w_n} \\ \vdots & \vdots & \cdots & \vdots \\ \frac{w_n}{w_1} & \frac{w_n}{w_2} & \cdots & \frac{w_n}{w_n} \end{bmatrix} \\ \vdots & & & & \\ A_n & & & & \end{matrix}$$

일관성 지수(CI)  $CI = \frac{\lambda_{\max} - n}{n - 1}$ 로 계산되며,  $\lambda_{\max}$ 는 이원비교행렬의 가장 큰 고유치(largest eigenvalue)를 의미하며, n은 비교되는 기준의 수를 나타낸다. AHP 이원비교행렬에서는  $\lambda_{\max} \geq n$ 의 관계가 항상 성립하는데, 완벽한 일관성을 지니는 비교행렬의 경우  $\lambda_{\max} = n$ 이며, 일관성이 클수록  $\lambda_{\max}$ 가 n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관성 비율(CR)을 사용하여 일관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sup>6)</sup>.

$$CR = \frac{CI}{RI} = \left( \frac{\lambda_{\max} - n}{n - 1} \right) \left( \frac{1}{RI} \right)$$

본 연구에서는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 측정요소에 대한 각 계층별 가중치의 CR은 10%(0.1)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목표에 대한 전체 응답자 이원비교의 일관성 비율은 의연금의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의 경우 모두 0.01로 측정되어 모두 서수적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0.1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각 측정영역의 가중치에 대한 일관성 비율 역시 모두 0.1미만으로 나타나, 전문가 및 실무현장 활동가 의견조사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재해의연금 배분기준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첫째, 재해의연금 배분기준의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그리고 지원원칙의 세 가지 측정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측정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즉 측정영역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지급시차 → 지원원칙 → 지원대상자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재난 시 무엇보다 재해의연금의 지급시차(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주택피해(전과, 반과), 주택피해(침

6) 무작위 지수(Random Index)는 1부터 9사이의 난수를 사용해서 구성된 비교행렬의 CI들의 평균값으로, 경험적 자료로부터 얻은 행렬의 차원별 평균무작위 지수를 의미한다.

<표> n×n의 이원비교행렬의 무작위 지수

n	1	2	3	4	5	6	7	8	9	10
RI	.00	.00	.58	.90	1.12	1.24	1.32	1.41	1.45	1.49

수), 생계지원(농어업임업업자), 생계지원(소상공인))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나 현재는 피해유형에 따른 지급시기에 차이를 두지 않고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합리적 개선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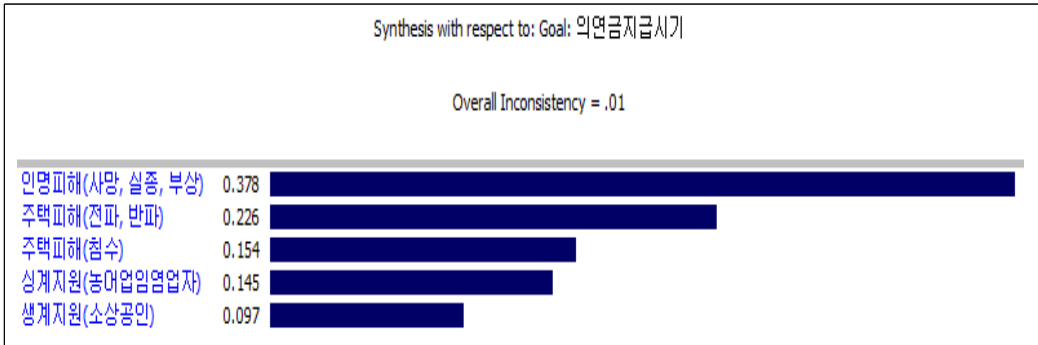
<그림 2> 의연금 배분기준

둘째, 재해의연금 배분에 있어 의연금 지원대상자 영역의 경우에는 주택피해(전파, 반파) → 농어업 임업업 피해 → 주택피해(침수) → 사회복지시설 피해 → 허가영세업자 피해 → 소상공인 피해 → 무허가영세업자 피해 → 한국거주 외국인 피해의 순서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재난시 주택의 전파와 반파의 경우처럼 오갈 데 없는 이재민들에 대한 의연금 배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반면, 한국거주 외국인의 피해와 무허가영세자영업자의 피해,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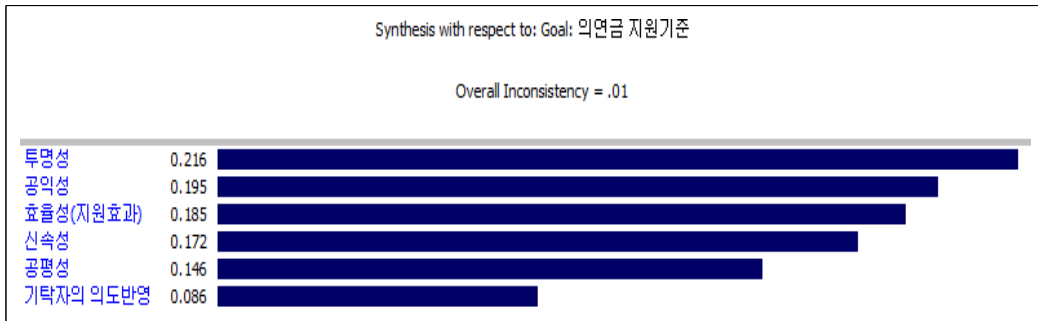
<그림 3> 의연금 지원대상자

셋째, 피해유형에 따른 의연금 지급시차(지급시기의 차이) 영역의 경우는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 주택피해(전파, 반파) → 주택피해(침수) → 생계지원(농어업임업업자) → 생계지원(소상공인)의 순서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의연금의 지급 시기는 무엇보다 인명피해 이재민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의연금이 지급되어야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상공인과 농어업 임업업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상대적으로 지급시기가 급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의연금 지급시차

넷째, 의연금의 지원원칙 영역의 경우에는 투명성 → 공익성 → 효율성(지원효과) → 신속성 → 공정성 → 기탁자의 의도반영의 순서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는 의연금의 지원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기탁자의 의도반영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의연금 지원원칙

#### IV. 결론

최근 재난의 빈발에 따른 재해의연금의 배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을 모색해 보고자 전문가 및 현장실무 활동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배분의 기준을 AHP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 우선, 합리적 재해의연금 배분기준 측정영역인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피해유형에 따른 의연금의 지급시기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급시차 → 지원원칙 → 지원대상자 순이었다. 두 번째, 의연금의 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 각각의 영역에 대한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의연금 배분에 있어 의연금 지원대상자 영역의 경우에는 주택피해(전과, 반과) → 농어업임업업 피해 → 주택피해(침수) → 사회복지시설 피해 → 허가영세업자 피해 → 소상공인 피해 → 무허가영세업자 피해 → 한국거주 외국인 피해의 순서로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둘째, 의연금 지급시차 영역의 경우는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 → 주택피해(전과, 반과) → 주택피해(침수) → 생계지원(농어업임업업자) → 생계지원(소상공인)의 순서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셋째, 의연금의 지원원칙 영역의 경우에는 투명성 → 공익성 → 효율성(지원효과) → 신속성 → 공정성 → 기탁자의 의도반영의 순서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있다. 우선, 측정영역(지원대상자, 지급시차, 지원원칙)의 경우, 지급시차 - 지원원칙 - 지원대상자 순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는 현재 피해유형에 따른 의연금의 지급시기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15~30일 소요)하게 모든 피해유형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재해의연금을 지급시기의 중요도에 따라 인명피해 - 주택피해 - 생계지원의 순으로 의연금 지급의 시기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이다. 둘째, 측정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연금의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서는 주택피해(전과, 반과) 이재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연금 지급시차와 관련하여서는 인명피해(사망, 실종, 부상)에 대한 지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연금의 지원원칙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2005. 표준국어사전.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김승권. 2002.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국재해구호협회.
- 김승권. 2005. 한국 재해구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1(2): 61-77.
- 김승권·김수봉·이자경. 2000. 효율적 재해구호대책을 위한 정책 방안. 재해구호대책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태순·양기근. 2009. 재난갈등의 분석과 갈등관리 전략: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12): 303-3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 2009.6.30 대통령령 제21588호].
- 소방방재청. 2005. 2005년도 재해구호사업 지침.
- 어윤배. 1975. 공동모금의 방향과 대책. 몽산 하상락교수 송수 논문집. 서울: 동원출판사.
- 옛센스국어사전. 1985. 서울: 민중서림.
- 오상영·하대용. 2006. AHP기법을 활용한 기업정보화 투자타당성 분석 사례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3(4): 303-319.
-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 이동규 · 양기근. 2009. 미래예측을 위한 조직학습체제 연구: AHP 기법을 활용한 과학기술예측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3(3): 39-77.
- 이재원. 2000. 지방정부의 이재민 구호품 전달체계 개선방안-수해이재민 구호를 중심으로. *부경대학교 논문집*. 5(1): 67-87.
- 이재은. 2007. 의연금의 효율적인 배분 방안. *전국재해구호협회*.
- 이재은. 2008. 한국의 이재민 구호와 재해의연금 지원 체계 개선 방향: 미국과 일본이 주는 시사점. *현대사회와 행정*. 18(3): 229-262.
- 이재은 · 유현정 · 안철현 · 정병윤. 2007.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 AHP 기법을 이용한 우선순위 측정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7(3): 277-299.
- 이재은·양기근. 2005. 재해의연금의 효율적 모금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전국재해구호협회*.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전국재해구호협회*. 2004. *전국재해구호협회 연보*.
- 홍영교 · 김태연 · 이은애 · 김도훈. 2009. 재해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18(4): 375-400.
- Gidron, Benjamin, Ralph M. Kramer, and Lester M. Salamon. 1992. *Government and the Third Sector: Emerging Relationships in Welfare State*.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 Glennerster, Howard. 1997. *Paying for Welfare: Towards 2000*. New York: Prentice Hall.
- Gronbjerg, K. 1993. *Understanding Nonprofit Funding: Managing Revenues in Social Services and Community Development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cations.
- Morris, S., Neidecker-Gonzales, O., Carletto, C., Munguia, M., & Wodon, Q. 2002. Hurricane Mitch and the livelihood of the rural poor in Honduras. *World Development*. 30(1): 49-60.
- Morris, Saul S. 2003. The Allocation of Natural Disaster Relief Funds: Hurricane Mitch in Honduras. *World Development*. 31(7): 1279-1289.
- Najam, Adil. 2000. The Four-C's of Third Sector-Government Relations: Cooperation, Confrontation, Complementarity, and Co-optation. *Nonprofit Management & Leadership*. 10(4): 375-396.
- Paul, Bimal Kanti. 2006. Disaster Relief Efforts: An Update. *Progress in Development Studies*. 6(3): 211-223.
- Satty, T. L. 1980.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Smith, David H. 1988. The Nonprofit Sector. T. D. Connors. ed. *The Nonprofit Organization Handbook*.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Thomas, Anisya and Lynn Fritz. 2006. Disaster Relief. *Harvard Business Review*. Nov. 1: 114-122.
- Trattner, W. 1984. *From Poor Law to Welfare State*. New York: Free Press.

Wodon, Q., & Yitzhaki, S. 2002. Evaluating the impact of government programs on social welfare: the role of targeting and the allocation rules among program beneficiaries. *Public Finance Review*. 30(2): 102-123.

World Bank. 2001a.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01: attacking pover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Bank. 2001b. *Honduras Poverty Diagnostic 2000: Report No. 20531-HO*. Washington, DC: World Bank.

<http://www.korean.go.kr>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

**梁奇根:**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위기관리 조직학습 체제에 관한 연구, 2004), 현재는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방정책,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등이다. 최근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2009, 공저), 한국의 재난현장대응체계(2009, 공저), 국가종합위기관리(공편저, 2009),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KDSN)의 정보 교류 협력구조에 관한 연구(2010)”, “재난갈등의 분석과 갈등관리 전략(2009)”,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2009)”, “A Study on Building the Regional Cluster-The Case of Fire and Emergency Industrial Cluster in Samcheok-si(2009)” 등이 있다 (withgg@wku.ac.kr).

**李恩愛:** 현재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사무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재난관리, 재해구호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재난발생시 재해약자지원시스템 구축방향 -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8)”, “재해구호품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 재해지역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공저, 2009)” 등이 있다(analoglee@hanmail.net).

투 고 일: 0000년 00월 00일  
게재확정일: 0000년 00월 00일

## A Study on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 Focused on Recipient, Time Lag for Payment, and Support Principle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

Gi Geun Yang, Eun Ae Lee

Recently, there are lots of disaster victims from frequent disasters. Disaster victims are thirsty for any other people's interests and supports. But if outside aid would distribute without an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we have been experienced conflict cases that many disaster victims have another pain and community was disintegrate under allocation of disaster aid and disaster relief donations. S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the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is paper deals with recipient, time lag for payment, and support principle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In order to measure relative importance of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three measurement fields and nineteen measurement indices were developed. The major findings and result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ime lag for payment has been perceived most important area among the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Next, support principles has got the second grade importance. Finally, recipient has been perceived important standards as third priority grade among the rational allocation standards of disaster relief donations.

**key word:** disaster, disaster victims, disaster relief, disaster relief donations